KOSHA GUIDE

C - 87 - 2013

7.9 맨홀 및 관내 청소작업

- (1) 작업 전 산소농도(18% 이상)를 측정하고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. 또한, 작업장소에서 메탄가스,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환기를 실시하고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.
- (2) 맨홀 내에서는 엔진양수기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 내부로 침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수중양수기는 사용 전에 절연저항 측정, 접지상태 확인,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. 또한, 수중양수기 인양로프는 마닐라로 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맨홀공간 내에서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외부에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구조요청(환기 전 투입금지) 및 환기실시 → 구조장비활용 구조 → 인공호 흡 → 의료처치 → 사고장소 폐쇄(2차 재해방지)
- (5) 재해자 구조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,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후 밀폐공간 내로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그 밖의 사항은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((KOSHA GUIDE C-14-2012)에 따른다.